



제 1619 호 고양시보

2019년 11월 19일(화)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 2019-346호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 2019-347호	향동천(지방하천) 개수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4

공 고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 2019-805호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5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 2019-80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관산동 774-3)	6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양시장

■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사업의 명칭 : 고양식사2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621번지 일원

나. 면 적 : 227,004m²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시행자 :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250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

나.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I.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I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IV.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변경없음) : 게재 생략

V.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24조(필지의 분할 및 합병, 공동개발)

구분	지 침 내 용	비고
기정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되, 연접한 필지는 합병 및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② 필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된 각각의 대지는 분할전의 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③ 합병시에는 합병전의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합병전 필지의 세장비와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④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변경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를 기본단위로 하되, 연접한 2필지는 1회에 한하여 합병 및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② 모든 필지의 지하주차장은 건축협정에 따른 통합개발이 가능하다. 단, 건축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른 완화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차장 설치시 주차유도 표시기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및 지하주차장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적극 검토 설치) ③ 필지를 분할할 경우 분할된 각각의 대지는 분할전의 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 ④ 합병시에는 합병전의 각 필지에 지정되었던 지침 및 결정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합병전 필지의 세장비와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다. ⑤ 획지계획은 환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택지개발팀 (☎8075 - 3155)

8.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향동천(지방하천) 개수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시행과 더불어 지구내 향동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치수능력 확장과 하천환경정비, 평상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30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비관리청 하천공사(변경)시행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양시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향동천(지방하천) 개수공사
 2. 공사시행위치
 - 시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1-4번지(덕은교)
 - 종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370-35번지
 3.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시행과 더불어 지구내 향동천에 대하여 치수능력 확장과 하천환경정비를 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및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 사업량 (하천개수 L=1,4km, 횡단교량 3개소)
 - < 당초 > : 덕은교 접속부 하상 발파석 밀다짐 및 콘크리트 채움, 옹벽 뒷공간 H-PILE매립
 - < 변경 > : 덕은교 접속부 하상 스톤네프시공 및 콘크리트 기초, 옹벽 뒷공간 SHEET-PILE매립
 - 사업비(변경없음)
 4.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공사기간 :
 - < 당초 > 2016. 6. 1. ~ 2019. 9. 30.
 - < 변경 > 2016. 6. 1. ~ 2019 11. 30.
 6. 변경사유
 - 덕은교 접속부 지장물 이설공사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 덕은교 접속부 하상 세굴방지 및 식생옹벽 뒷공간 전도방지를 위한 공사계획 변경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에 따라 “계재생략”
 8. 관계도면 : “계재생략”
- ※문의사항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생태하천팀(031-8075-275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 단지사업2부(070-4760-7995)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행위자 불명의 사유로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1. 제 목 :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6.
3. 대 상 자 : 3명

행위자		행정대집행 계고내용		
성 명	주 소	불법 점용 위치	위반내용	대집행방법
미상	미상	대장천 제방도로변 (토당동 190-48, 190-49번지)	불법점용(경작) (약 200㎡)	행정대집행 (철거)
미상	미상	창릉천 제방도로변 (지축동 802번지)	불법점용 (컨테이너 2동)	행정대집행 (철거)
미상	미상	공릉천 자전거도로변 (관산동 904-5번지)	불법점용 (창고 2동)	행정대집행 (철거)

4.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5. 송달내용

- 가. 해당 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철거,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나.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환경녹지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6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다.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031-8075-5251). 끝.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천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고 행위자 불명의 사유로 같은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1. 제 목 :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1. 19. ~ 2019. 12. 6.
3. 대 상 자 : 3명

행위자		행정대집행 계고내용		
성 명	주 소	불법 점용 위치	위반내용	대집행방법
미상	미상	공릉천 자전거도로변 (관산동 774-3번지)	불법점용 (비닐하우스 등)	행정대집행 (철거)

4.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등
5. 송달내용
 - 가. 해당 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철거,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 나. 기한내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환경녹지과)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6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다.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031-8075-5251). 끝.